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95
----------	-------

발의연월일 : 2025. 12. 4.

발 의 자 : 김병기 · 김문수 · 박용갑
허영 · 박상혁 · 윤종균
문금주 · 김남근 · 오세희
전진숙 · 이훈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본인의 직무가 아님에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의사자 및 의상자를 아울러 이르는 ‘의사상자’라는 표현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부각되어 그 숭고한 뜻을 기리는 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구조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사상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국가유공자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과 달리 단체 설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권익 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사회유공자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유공자의 위상과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9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사회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사회유공자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사회유공자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제4호 및 제6호 중 “의사상자”를 각각 “사회유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유공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에 3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의사상자”를 각각 “사회유공자”로 한다.

제7조 중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의사상자”를 각각 “사회유공자”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① 국가는 사회유공자가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본인이나 구조대상자가 아닌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하여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받은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제1항의 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1항의 보상금과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차액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⑤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범위, 지급절차,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제8조 및 제9조”를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유공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중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7조로 하고,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한국사회유공자회의 설립 등) ① 사회유공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이하 “사회유공자등”이라 한다)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유공자등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유공자회(이하 “사회유공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회유공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회유공자회는 정관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사회유공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설립 및 설립인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회원) 사회유공자회의 회원은 사회유공자등으로 한다.

제22조(정관) ① 사회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회칙
3.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자와 그 밖의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사회유공자 발굴, 지원, 홍보, 교육, 연구 및 사회유공자 인정 지원 등 사회유공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8. 회계, 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사회유공자회의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유공자회의가 아니면 한국사회유공자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유공

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사회유공자회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회유공자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유공자회에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유공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유공자회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그 사무와 관련된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유공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를 위반하여 사회유공자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청기간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사회유공자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각각 사회유공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경우 사회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사회유공자심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사회유공자심사위원회 위원을 제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한국사회유공자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등기된 사단법인 한국의사상자협회는 정관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한국사회유공자회로 성립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u>사회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u>의사상자</u> 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u>사회유공자</u>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 <u>의사상자</u> ”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6. (생 략)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사회유공자</u> ----- -----. 5.·6. (현행과 같음)
제4조(<u>의사상자심사위원회</u>)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u>의사상자심사위원회</u> (이하 “위원	제4조(<u>사회유공자심사위원회</u>) ① ----- ----- <u>사</u> <u>회유공자심사위원회</u> -----

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사자의 부상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3. (생략)

4.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

5. (생략)

6.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
여야 한다.

-----.

1. -----사회유공자-----

2. 3. (현행과 같음)

4. 사회유공자-----

-

5. (현행과 같음)

6. -----사회유공자-----

② -----

-----.

-----하여야

하며,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

유공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에 3인 이상 포함되도록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③ _____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
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
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생략)

제7조(영전의 수여 등) 국가는 의
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
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
감이 될 수 있도록 「상훈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 ① (생략)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
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
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

-----사회유공자-----

--.

④ (현행과 같음)

⑤ -----

-----사회유공자-----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영전의 수여 등) -----사
회유공자-----

--.

제8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9조(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① 국가는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의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신설>

-----사회유공자-----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① -----사회유공자-----
-----사회유공자-----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① 국가는 사회유공자가 구조 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본인이나 구조대상자가 아닌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

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사자 또는 의사자유족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하여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받은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제1항의 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1항의 보상금과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차액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생략)

제11조(의료급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는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전에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이 지급한 의료비의 반환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호기관) (생략)

⑤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범위, 지급절차,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료급여)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회유공자-----

제16조(보호기관) ① (현행 제목

<신 설>

<신 설>

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교육보호의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 당시에 교육보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보호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신 설>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유공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

-----사회
유공자-----

-----5년-----
-----.

제20조(한국사회유공자회의 설립 등) ① 사회유공자, 의사자유족

<신 설>

<신 설>

및 의상자가족(이하 “사회유공자등”이라 한다)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유공자등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유공자회(이하 “사회유공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회유공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회유공자회는 정관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사회유공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설립 및 설립인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회원) 사회유공자회의 회원은 사회유공자등으로 한다.

제22조(정관) ① 사회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1. 목적

2. 명칭 및 회칙

3.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자와 그 밖의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사회유공자 발굴, 지원, 홍보, 교육, 연구 및 사회유공자 인정 지원 등 사회유공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8. 회계, 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사회유공자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유공자회가 아니면 한국사회유공자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

<신 설>

회유공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사회유공자회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회유공자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유공자회에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유공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유공자회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그 사무와 관련된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유공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입 또는 검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생략)

제21조(벌칙) (생략)

<신설>

사를 하는 공무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27조(벌칙)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를 위반하여 사회유공자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

한다.